

재외선거 준비상황

재외선거와 관련한 현지 여론이나 문제점 및 개선의견을 '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(<http://bk.nec.go.kr>)'의 '참여마당/인적네트워크 커뮤니티'에 올려 주시거나 이메일(paix@korea.kr)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귀하의 고견을 재외선거 정책개발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.

※ 재외선거 퀴즈(9월)를 첨부하니, 재외선거 관련 의견과 함께 퀴즈 정답을 위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반기별로 참여도 등을 평가하여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.

※ 지난 안내자료는 재외선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재외선거 준비상황

1 재외선거관 권역별 워크숍 개최

- 2011. 4월부터 전 세계 165개 공관 중 55개 공관에 파견된 선거관리 전문인력(재외선거관) 55명을 대상으로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대비한 워크숍을 2011. 8. 29. ~ 9. 3. 기간 중 3개 권역(미주, 아주, 구주·중동·아프리카)으로 나누어 개최하였습니다.
 - ※ 직원이 파견된 공관 관할구역의 예상 재외선거인수는 약 214만 명 정도로 전체 예상 재외선거인수 224만 명의 약 95.5%
- 3일간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서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관리방향 및 지침 등 시달, 단위업무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으며, 도상연습 및 모의선거 관리 경험을 공유하여 동일 권역 내 선거관리 환경의 공통점·특수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함으로써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법정사무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.



- 우리 위원회는 「공직선거법」 제218조에 따라 내년 양대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2011. 10. 14.부터 2013. 1. 18.까지 재외공관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·운영합니다.
 - ※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제18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·운영기간이 시작되므로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연이어 운영(근거 : 「공직선거법」 제218조 제9항)
-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공관은 총 158개 공관(대사관 105개, 총영사관 42개, 분관 8개, 출장소 3개)으로 「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」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관(분관·출장소 포함)마다 설치하되, 「공직선거법」 제218조 제1항 및 제218조의29 제1항에 따라 다음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습니다.

재외선거관리위원회 미설치 공관

- 영사사무를 수행하지 않는 공관(교황청대사관 1개)
-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공관(유엔대표부, 제네바유엔사무처 및 국제기구대표부,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대표부, 경제협력개발기구대표부 등 4개)
- 영사관할구역 안에 공관사무소가 설치되지 않은 공관(사모아대사관 등 겹입국 74개)
-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고 결정한 공관(아프가니스탄대사관 등 7개)
 - 전쟁·폭동 등 주재국 정세 불안
 - ↳ 아프가니스탄대사관, 예멘대사관, 리비아대사관
 - 최근 신설 공관으로 외교전용망 등 재외선거 기반 미조성
 - ↳ 다렌출장소, 키갈리분관, 캄팔라분관, 마나마분관

※ 덧붙임 1 :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 공관

- 한시적 합의제 선거관리기구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**위원 정수는 현재 5명**으로,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2명, 공관장 또는 공관장이 추천하는 공관원 1명,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(한나라당, 민주당)이 추천하는 2명으로 구성됩니다.
- 여러 달에 걸친 **위원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되는** 각 공관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재외투표소 설치장소와 운영기간 등의 결정·공고, 재외투표소의 투표관리, 투표사무원 위촉 및 투표참관인 선정, 재외투표관리관이 행하는 선거관리사무 감독,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 등의 재외선거사무를 담당하게 됩니다.

3

재외선거 관련 「공직선거법」 개정

- 2011. 9. 16.(금) 국회 본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었으며, 10월 초 공포될 예정입니다.
 -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여권원본과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도록 하여 불법적 복수국적 여부에 대한 확인 강화(「공직선거법」 제218조의5 제2항 및 제3항)
 - 현재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재외선거 투표시간을 2시간 앞당겨 **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도록 함**으로써 재외선거인 등의 투표참여 편의 확대(「공직선거법」 제218조의17 제6항)
 - 공관에 파견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선거범죄 등을 조사하는 경우 **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·감독을 받도록 함**으로써 조사업무의 독립성 강화(「공직선거법」 제218조의28 제2항)

4

재외선거 관계기관 실무추진단 회의 개최

- 2011. 9. 8.(목) 우리 위원회를 비롯한 4개 기관(외교통상부, 법무부, 대검찰청)이 참여하는 재외선거 관계기관 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.
- 최근 조총련계 재일동포 등의 선거권 행사에 대한 언론과 정치권 등의 우려 및 대책 마련 요구가 있어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, 정부 관계기관은 헌법상 혈통주의에 따라 생래적인 국민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의 국적을 제한할 수 없고, 특정 국가 거주자라는 이유로 재외국민등록을 제한할 수 없으며, 국민으로 인정된 사람에게 일종의 신분증인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는 등 현행법상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.
- 우리 위원회는 정부 관계기관이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우려가 해소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.



-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훈교 재외선거기획관은 2011. 9. 22.(목) '재외 국민 투표 앞으로 반 년,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'라는 주제로 KBS 1 라디오 '열린 토론'에 출연하였습니다.
- 학계·법조계 등의 패널이 참여하여 100분간 진행된 이번 토론에서 2007년 헌법재판소 결정 등 재외선거제도의 도입 연혁 및 외국 현황, 재외선거제도 개요 등을 소개하였고, 패널들과 재외선거에 대한 기대와 우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.
- 특히 정훈교 재외선거기획관은 공관 2회 방문의 불편과 선거운동과정의 공정성 보장 문제 등에 대해, 등록신청방법 및 투표방법을 중심으로 한 투표편의 제고는 현행법 하에서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와 맞물리는 문제이므로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고,
- 또한 두 번의 모의 재외선거를 통해 국가별·공관별로 상이한 재외 선거 관리여건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였으며, 앞당겨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기간에 맞추어 현지 한인언론 등을 활용하여 재외선거인에게 정당·후보자에 관한 정보 제공을 하는 등 재외선거에 대한 기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였음을 알렸습니다.
- 마지막으로, 선거사에 한 획을 그을 역사적 사건인 재외선거 실시가 재외국민 화합의 장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.

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 공관

구 분	계	대사관	총영사관	분 관	출장소	비 고
공관 수	158	105	42	8	3	

지 역	구 분		공 관 명
아 주 (45)	대 사 관	23	네팔, 뉴질랜드, 동티모르, 라오스, 말레이시아, 몽골, 미얀마, 방글라데시, 베트남, 브루나이, 스리랑카, 싱가포르, 오스트레일리아, 인도, 인도네시아, 일본, 중국, 캄보디아, 태국, 파키스탄, 파푸아뉴기니, 피지, 필리핀
	총영사관	20	일본(고베, 나고야, 니가타, 삿포로, 센다이, 오사카, 요코하마, 후쿠오카, 히로시마), 중국(광저우, 상하이, 선양, 시안, 우한, 청두, 칭다오, 홍콩), 인도(뭄바이), 베트남(호치민), 오스트레일리아(시드니)
	분 관	2	뉴질랜드(오클랜드), 파키스탄(카라치)
미 주 (37)	대 사 관	21	과테말라, 니카라과, 도미니카, 멕시코, 미국, 베네수엘라, 볼리비아, 브라질, 아르헨티나, 에콰도르, 엘살바도르, 온두라스, 우루과이, 칠레, 캐나다, 코스타리카, 콜롬비아, 트리니다드토바고, 파나마, 파라과이, 페루
	총영사관	13	미국(뉴욕, 로스앤젤레스, 보스턴, 샌프란시스코, 시애틀, 시카고, 애틀랜타, 호놀룰루, 휴스턴), 캐나다(몬트리올, 밴쿠버, 토론토), 브라질(상파울루)
	분 관	1	자메이카(킹스턴)
	출 장 소	2	호놀룰루(하갓나), 시애틀(앵커리지)
구 주 (45)	대 사 관	33	그리스, 네덜란드, 노르웨이, 덴마크, 독일, 러시아, 루마니아, 벨기에, 벨라루스, 불가리아, 세르비아, 스웨덴, 스위스, 스페인, 슬로바키아, 아일랜드, 아제르바이잔, 영국, 오스트리아, 우즈베키스탄, 우크라이나, 이탈리아, 체코, 카자흐스탄, 크로아티아, 키르기즈, 터키, 투르크메니스탄, 포르투갈, 폴란드, 프랑스, 핀란드, 헝가리
	총영사관	7	이탈리아(밀라노), 러시아(블라디보스톡, 이르쿠츠크, 상트페테르부르크), 독일(프랑크푸르트, 함부르크), 터키(이스탄불)
	분 관	4	독일(본), 스페인(라스팔마스), 카자흐스탄(알마티), 타지키스탄(두산베)
	출 장 소	1	블라디보스톡(유주노사할린스크)
중 동 (16)	대 사 관	14	레바논, 모로코, 사우디아라비아, 수단, 아랍에미리트, 오만, 요르단, 이라크, 이란, 이스라엘, 이집트, 카타르, 쿠웨이트, 튀니지
	총영사관	2	사우디아라비아(젯다), 아랍에미리트(두바이)
아프리카 (15)	대 사 관	14	가나, 가봉, 나이지리아, 남아프리카공화국, 세네갈, 알제리, 앙골라, 에티오피아, 짐바브웨, 카메룬, 케냐, 코트디부아르, 콩고민주공화국, 탄자니아
	분 관	1	나이지리아(라고스)

재외선거 퀴즈 (8월) 정답

* 8월 재외선거 퀴즈 정답 ⇨ 4번(㉔)

- ㉑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사본은 교부하지 않습니다. 국내선거에서는 후보자 (비례대표 제외) · 선거사무장 · 선거연락소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, 선거인 명부 사본 등을 교부하여야 합니다. 그러나 재외선거에서는 재외선거인 명부등을 활용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도 없으므로 개인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본 교부를 하지 않습니다.

☞ 「공직선거법」 제218조의10(재외선거명부등의 열람) 제6항

- ㉒ 재외선거인명부가 확정되면 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더라도 국내선거인명부에는 등재되지 않습니다. 한편, 국외부재자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국내선거인명부 모두에 등재 되는데,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의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를 기준으로 국내선거인명부에도 등재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부 확정 후 주민등록이나 주소를 옮기더라도 새로운 국내선거인명부에 등재 되는 것은 아닙니다.

☞ 「공직선거법」 제37조(명부작성) 제1항, 제218조의9(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) 제1항

- ㉓ 천재지변 또는 전쟁 · 폭동,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공관 관할구역에서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을 한 경우에는 재외투표기간 중 투표를 마치지 못 했더라도 재외투표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이미 실시된 재외투표만을 국내로 회송 합니다.

☞ 「공직선거법」 제218조의29(천재지변 등의 발생 시 재외선거사무의 처리) 제2항

- ㉔ 재외투표는 국내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지므로(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) 출구조사 결과가 알려지는 경우 국내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내의 부재자투표소와 같이 출구조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.

☞ 「공직선거법」 제218조의17(재외투표소의 설치 · 운영) 제7항

재외선거 퀴즈 (9월)

● **문제** 다음 중 「공직선거법」(2011. 7. 28. 개정)에 부합하는 진술을 모두 고르시오.

- ㉠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설치·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,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운영기간 중 또는 운영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·운영기간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이미 운영 중인 재외위원회를 다른 선거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본다.
- ㉡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없는 사람, 정당의 당원인 사람,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- ㉢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를 관리하기 위하여 정당추천위원 중에서 책임위원 1명을 지명하여야 한다.
- ㉣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20일까지 재외투표소의 명칭·소재지와 운영기간 등과 투표사무원의 명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

① ㉠, ㉡

② ㉡, ㉢, ㉣

③ ㉠, ㉡, ㉣

④ ㉢, ㉣

거주 국가	재외선거 관련 의견(지역 선거정황 포함)
성명	